

이론서
7-3

평양국제토론회 토론회

일제가 감행한 100여만명의 조선인학살만 행은
인권인도에 대한 대죄

1993. 11. 7-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전영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지난 41년간의 비법적인 조선강점 기간에 저지른 범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범죄의 하나는 조선인민을 학살한 인적피해에 관한 대죄이다.

일제는 지난 조선강점기간 100만명 이상의 무고한 조선인민들을 가장 야만적이고 포악한 방법으로 학살한 천 추에 용서할수 없는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하여 조선국제법학회는 1993년 3월 31일 고소장을 통해서 일제의 조선인학살만행을 국제사회앞에 고소한바 있다.

일제의 조선강점기간 일본정부측 자료들에 밝혀진 조선인인적피해자수를 부류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병, 독립군, 정치운동탄압 등으로 13만 9,600여명

2) 강제편행 (징용, 징병, 《정신대》) 등으로

71만 1,600여명

3) 국내에서의 학사 등으로 1만 9,900여명

4) 수감자중에서 학살된자 9,900여명

5) 식민지통치에 기인하는 기타 사망자

12만 3,900여명

계 100만 5,000여명

지난날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저들만이 《우수한 민족》이라고 자처하면서 조선사람은 응당 저들의 지배와 멸시를 받아야 한다고 떠벌이였으며 우리 인민을 마음대로 학살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초기 초대 《조선총독》 테라우찌는 《조선사람은 우리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뇌까렸다. 이것은 당시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가장 포악한 살인《지령》이였으며 식민지살인통치의 기본방식이였다.

일제는 이러한 강도적론리에 따라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전기간에 수백만명의 무고한 조선인민을 닥치는대

로 체포, 투옥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학살만행은
1919년 3.1봉기때 더욱 로골화되었다.

일제는 이해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의 3개월사이
에 7,500여명의 조선인민과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
하고 1만 5,90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4만 6,900여명을 검거한것을 비롯하여 봉기 전기간
에 걸쳐 무려 수만명이나 살상하였다.

일제는 조선국내에 서뿐아니라 중국 동북지방과 일본
등지에서도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과 학살에 다치지않았
었다.

1920년 10월초 일제는 저들의 관헌과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라남 제19사단을 비롯한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간도지방에서 연 3개월동안이나 피비린
살육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1920년

《간도대토벌》(《경신년토벌》)이라고 불리우는 토벌에서
무려 3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살해하였다.

1923년 《간포대지진》때의 일제의 학살만행은 아
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포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자 당시 일본정부의 내무상 미즈노 렌파로는 제일
조선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조선사람들을 학살할테 대한 살인지령을 전국각지에 내렸
으며 이와 함께 일본반동들은 《계엄사령부》라는것까지
조작하고 군대와 경찰, 테로단, 《자경단》 등을 내돌아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마구 살해하였다.

이리하여 당시 도요에서만도 9월 1일부터 18일까
지의 사이에 6,160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된것을 비롯하여 일본 각지에서는 2만 3,000여
명의 재일조선인들이 살해되었다.

이러한 살인만행은 일제가 감행한 살인대죄가운데서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제식민주의자들이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야수적학살만
행에 대하여 당시의 한 기록은 《...일본인이 수천수만의
조선량민에 대하여 감행한 그와 같은 란타와 악형은 너

무나 흉악하고 참혹하여 사람의 귀로써는 그것을 들어서
믿지 못할 정도이며 사람의 의사로써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되었다. ... 일본인은 이와 같은 극도의
흉악한 만행을 감행하고도 오히려 그것이 부족하여 그
이상 더 가혹한 방법이 없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정
도이다.》(《한국독립운동지령사》 120-123페이지)라
고 하였으며 일제어용학자 시노부 세이자부토는 《일본헌
병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탄압에 광분하였다.
... 일본헌병의 포악함은 형언할 수 없는바 총검으로 찢어
죽이고 목을 달아매어 처형하였다.》(《대정정치사》 도
표 1955년 841페이지)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한 외국사람은 분노에 찬 글발로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야수적만행을 규탄하면서 《...가만히 생각할
때 세계적으로 남의 나라를 멸망시킨자도 허다하지마는
누가 이런 역사상 있어보지 못한 참혹한 방법을 적용한
자가 있었는가? ... 이러한 인류의 원수 국제적독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일어나서 이를 몰아낼 책임
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내외여론들은 너무나
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일제의 파쑈적인 폭압과 학살
만행에 대한 실토와 규탄이었다.

참으로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살인대죄는 그 규모와 잔인성에 있어서 동서고금의 침략사와 전쟁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인권유린행위였으며 살인대죄였다.

일제에 의한 100여만 명의 조선인인적피해는 국제법의 규범들에 대한 잔폭한 유린행위이다.

국제법은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행위규범(준칙)들의 총체로서 국제법의 당사자, 국제법에서의 주민과 령역, 국제조약, 국가의 대외교섭기관, 국제기구, 국제분쟁문제해결의 국제법적수단들, 전쟁법규 및 관습과 같이 국가들이 대외적으로 자기의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협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제들을 규제대상으로 하고있다.

극동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씨)항과 뉴른베르그군사재판소 조례 제6조에는 다같이 인도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전쟁전 또는 전쟁중에 모든 민간인에 대하여 감행한 학살, 섬멸, 노예화, 랍치 및 그밖의 비인간적행위는 범죄가 감행된 나라의 국내법에 저촉되건 안되건 관계없이 전쟁범죄로 되며 이와 관련된 정치적, 인종적 리유에 기초한 박해행위로 된다.》고 규정하였다.

국제법의 조례에 비추어볼 때 일제가 전쟁전 또는 태평양전쟁기간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학살한 대죄는 제국주의적인 식민지략탈과 민족적차별, 멸시에 기초한 정치적 및 반인륜적 박해행위로서 인도에 관한 범죄로 된다.

일제는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41년동안 《범죄즉결령》(1910년), 《조선형사령》(1912년), 《치안유지법》(1925년), 《신치안유지법》(1928년), 《국가총동원법》(1938년), 《국민징용령》(1939년), 《개정치안유지법》(1941년), 《학도병제령》(1943년) 등 수많은 살인악법들을 려이어 조작공포하여 휘두르면서 수백만명의 조선사람들을 검거, 투옥하고 잔인하게 학살하였을뿐아니라 수많은 도시와 농촌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등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일제는 또한 1925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일본을 포함한 105개 나라가 서명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수단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할데 대한 의정서》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무고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붙잡아 생체실험대상으로 삼아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감행하였다.

1949년에 채택된 전쟁피해자보호에 관한 제네바협

약들과 1977년에 채택된 이 협약들에 대한 보충의정서들에서는 점령지역에서의 주민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 노예로동, 점령지역경내에서와 경외로의 강제이주, 상병자, 해상조난자, 포로, 사민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 인질살해, 그밖의 비인도적행위, 공유 또는 사유재산의 약탈, 도시와 농촌의 무차별파괴, 군사적필요성으로 정당화할수 없는 대상물의 황폐화를 전쟁범죄,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로 규정하고있다.

일제는 1930~1940년대에 조선에서 이른바 《문화통치》의 간판마저 벗어던지고 과소적인 독압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야수적인 학살만행을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일제는 1931년말-1932년초에 걸쳐 4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살해하였으며 일제가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들은 1933년 한해동안에만도 《사상범》이라는 이름밑에 6만 6,000여명을 검거투옥학살하였다.

일제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고역장들에 끌어가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나중에는 《비밀엄수》라는 구실밑에 집단적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

일제는 1930년대말 - 1940년대 전반기 《대동아 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발악하던 시기에 각종 악법들을 조작 공포하여 사소한 반일적요소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한편 갖가지 동원령을 공포하고

15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와 16살부터 40살까지의 여성들을 모조리 전쟁의 대포탄으로, 공사장으로 내몰았다. 그리하여 1939년 1월 《국민징용령》이라는 것을 공포한후 불과 몇해사이에 《징용》을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600여만 명을 강제동원하였으며 그중 150여만명 이상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일본의 탄광이나 군사시설 공사장 등으로 끌어가서 죄수처럼 취급하면서 그들에게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나중에는 《비밀엄수》라는 구실 밑에 집단적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포악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당시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징용》으로 끌어난 조선로동자 800명을 4년간 혹사하다가 공사가 끝날두렵 모두 학살하였으며 꾸릴렐도의 한 군사시설공사장에서는 5,000여명, 예무지섬에서는 2,500명의 조선로동자들을 참혹하게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1939년부터 1945년 패망할 때까지의 기간에만

도 강제련행하여 노예로등을 강요하하다가 살해당한 조선인 로동자수는 무려 57만여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사람들을 다치는대로 체포, 투옥, 고문, 학살하고 전쟁터와 고역장에 내몰아 죽이고 심지어 세균 무기의 생체실험대상으로 삼아 학살한 일제의 전대미문의 대학살참상은 아세아와 세계를 전패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야망실현에 응근 한민족, 한나라를 강그리 희생시킬것을 획책함으로써 인류도덕과 국제법을 무참히 짓밟고 인류공동체에 부모하게 도전해나선 용납할수 없는 대죄이다.

현대국제법은 국가가 국제법규범을 유린하는 불법행위를 감행하였을 경우 국가의 국제법적책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며 이러한 국제법적책임의 당사자는 다름아닌 국가라는것을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일제가 과거 비법적으로 조선을 강점한 기간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학살한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를 감행한 국제법적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조선인민과 인류앞에 과거일제가 저지른 천추에 용서할수 없는 인권인도에 관한 대죄를 근

반 세기가 되는 오늘까지도 똑똑히 인정, 반성, 보상할 대신 군사대국화, 핵대국화 책동에 매여달리면서 《자위대》 무력을 해외침략의 길로 내돌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와 아세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행위인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령전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의 표현으로서 오늘의 국제사회에서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의 조선강점기간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국제법의 규범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감행한 살인대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와 보상을 하여야 하며 최악으로 가득찬 과거를 성실하게 청산하여야 한다.